

문서번호	세무1과-6040
결재일자	2015.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세입총괄담당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치옥	김형원	최상균	정은수	04/13 김병환	
협 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세무2과장 문영희 규제개혁담당 김용환		예산담당 代이정희 한옥문화담당 노상훈 세입정리담당 이광호 법인관리담당 이종훈 재산세2담당 윤찬구 재산세1담당 김공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2015. 4.

**기획경제국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세감면조례에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반영
- 한옥밀집지역이 지정 공고됨에 따라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 개정 계획 구청장 방침 (세무1과-4522호, 2015.3.18.)
-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3.19.~2015.4.8.)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음
-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의뢰 (감사담당관. 2015.3.24.)
→ 원안대로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여성가족과. 2015.3.24.)
→ 원안대로 동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2015.4.8.)
→ 개최결과 우리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의뢰 (기획예산과. 2015.4.9.)
→ 법제심사결과 통보 (2015.4.10.)

II

개정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 정비 필요
- 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2014.12.26.)에 따른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

III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 제명 변경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

※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 변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 축소 (안 제2조)

- ▷ ‘16년말까지 조례로 재산세의 75%(‘17년~‘18년말:50%)범위내에서 재산세 경감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안 제3조)

- ▷ 현행 재산세 감면율(100%)을 50%로 축소
- ▷ 국가기관이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으로 감면율을 축소(100%→50%)하고 50% 추가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추가감면하는 것은 “감면폭 축소지원”이라는 법 개정취지와 기타 제한구역의 감면율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추가감면 개정은 없으며 이에 따라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의 감면율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로 축소함 (종로구 75%,
중구 50%)

-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종료로 감면조항 삭제 (안 제6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의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간 만료(2014.12.31.)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 **한옥밀집지역의 지정 공고에 따른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10조)**
 - ▷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 50% 경감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u>100분의 100</u>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 ----- ----- ----- ----- -----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u>100분의 75</u> 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u>100분의 50</u>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u>부동산</u>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u>부동산</u>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신 설>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제10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p>제10조 ~ 제16조 (생략)</p>	<p>1.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토지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p> <p>3. 건축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1조 ~ 제17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p>
-------------------------	---

IV 향후 추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4. 15.
- 구의회 상정 : 2015. 4월 제234회 임시회

첨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